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963

발의연월일: 2021. 10. 26.

발 의 자:이상헌·강선우·김병기

송재호 · 양정숙 · 유정주

이동주・이병훈・장경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 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제13조(과세표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제1</u>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u>제></u>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	
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